

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

의안 번호	12-45
----------	-------

제출일자 : 2012. 6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39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제1항 제6호,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에 따라 우리 구 관내 ‘상암2택지개발사업’ 추진에 따라 조성된 공공청사용지를 사업시행자 인 서울시 SH공사로부터 조성원가로 매입하여 향후 구민의 복지증진 사업에 대비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.

2. 주요골자

○ 공공청사 용지 현황

- 위 치 : 마포구 상암동 상암2지구내 (상암동 665 일원, 전)
- 면 적 : 787㎡(약 238평, 소유자 : 서울시 SH공사)
- 공급금액 : 2,090,110천원(추정조성원가)
- 대금납부 ㄱ 계약금 : 공급금액의 10% 이상(계약체결시 납부)
 ㄴ 잔 금 : 공급금액의 90% 이하
- 허용용도 : 자치센터, 공공도서관, 보건소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

▶ 상암2 택지개발예정지구 공공청사 (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1226호, 2009.12.28)

시행자	건폐율	용적율	높이	건축 한계선	허용용도
서울특별시 SH공사	60% 이하	250% 이하	최고 5층 이하	2m	-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3호 바목, 지역자치센터, 보건소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

○ 매입 필요성

- 지속적인 마포지역 개발로 인해 사회복지시설, 문화시설 등 향후 다양한 형태의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과 복지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 필요
- 상암2지구 월드컵파크 준공에 따라 입주민(4개 단지, 2,865세대, 약 10,000명) 이 증가하여 주민들의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공공청사용지 확보 필요
- 사업시행자인 SH공사에서 택지개발 조성원가로 공급하므로 시세에 비해 대폭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용지 확보 가능

○ 소요예산(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)

- 2012년도 소요예산 : 209,020천원(부지매입 계약금)
- 연도별 소요예산

(단위 : 원)

구분	원금	이자	계	연도	비고
계약금	209,020,000	-	209,020,000	2012	
1회차	627,030,220	75,243,620	702,273,840	2013	연리4%
2회차	627,030,220	50,162,410	677,192,630	2014	연리4%
3회차	627,030,220	25,081,200	652,111,420	2015	연리4%
합계	2,090,110,660	150,487,230	2,240,597,890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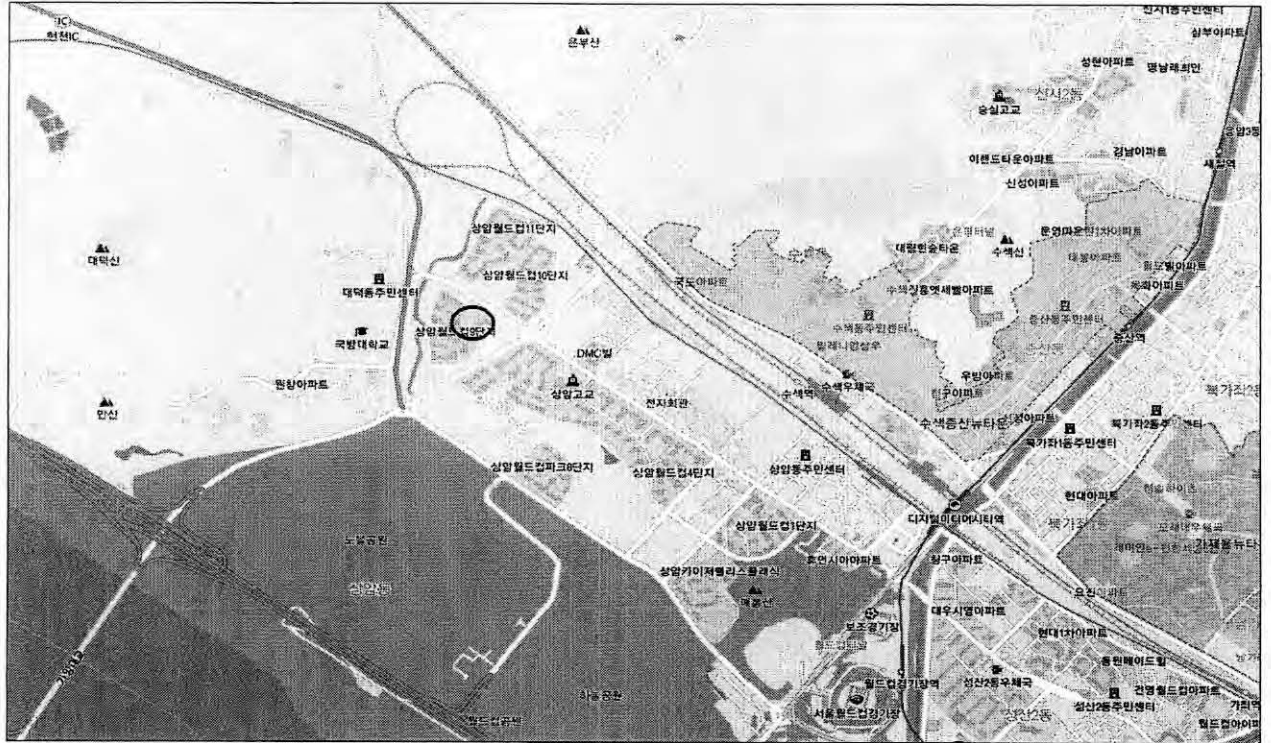
3. 근거

- 지방자치법(법률 제10827호, 2011.7.14) 제39조 제1항 제6호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(법률 제10580호, 2011.4.12) 제10조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23718호, 2012.4.10) 제7조
-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(조례 제855호, 2012.02.23) 제10조
-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(조례 제812호, 2011.02.10) 제3조

4. 향후계획

- 상암2지구 부지 매입 계약 체결 : 2012. 10월
- 매입 후 건축계획 수립시 까지 공영주차장 등으로 활용

□ 위치도



□ 전경사진



2011년 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 (11-2)

(단위 : m²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추정가액	취득시기	취 득 사 유	비고
	지 목	소 재 지	수 량				
001	토지	마포구 상암동 665번지 일대	1 (787m ²)	2,240,597 (연부이자 포함)	2012.10 매매계약 예정	구민의 복지증진 사업에 대비 공공용지 확보	금년 추정가액의 10% 계약금 납부후 3년 연납 예정

- 주) (1)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취득방법을 표시한다.
 (2)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, 취득
 재산 소유자 주소·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(3)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.
 (4) 기타 작성요령은 “양식 11-4”를 참조